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대학정보화위원회 규정

2. 규정류(제정·개정)사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287호, 2024.3.5. 일부개정, 2025.1.1. 시행) 제8조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개정·시행)에 따라 본교 「사이버보안 관리규정」이 전부개정되고, 「정보전산원 운영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본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위원회는 클라우드·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도입 보안성 심사 및 주요 정보시스템 도입 보안성 심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범위 제한을 완화하며, 정보화 및 사이버보안 관련 안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위원장 직책명 오기(정보지원센터장 → 정보전산원장) 등 형식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3. 관련 근거:

-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
- 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8조
- 다. 「보안업무규정」 중 암호자재 및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 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중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바. 국가정보원 사행-1309(2026.4.27.)
- 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개정·시행)
- 아. 본교 「사이버보안 관리규정」 및 「정보전산원 운영규정」

4. 주요내용:

- 가. 제2조(기능) 심의사항 정비 - 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신기술 도입 보안성 심사 중심으로 정비. 클라우드·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주요 정보시스템 도입의 보안성 심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변경의 보안성 심사, 주요 정보시스템의 신설·변경 보안성 심사, 사이버보안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 사항에 추가. 정보전산원장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메인 컴퓨터 등 전산관련기기 선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
- 나. 제3조(구성) 위원장 직책명을 현행 조직 명칭에 맞게 "정보지원센터장"에서 "정보전산원장"으로 정정하고, 정보전산원장이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함을 명문화하며, 위원 정원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 위원 위촉 시 "정보관련 분야" 범위 제한을 삭제하여 전임교

원 및 직원 전체로 위원 풀을 확대

다. 제6조(회의) 정보화 및 사이버보안 관련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대면회의와 서면 회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회의 절차 정비 - 안전 발생 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되, 서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회신 및 회신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

라. 제7조(회의록) 서면회의의 경우 위원의 회신문서 또는 결재문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총장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제7조의2(보안성 심사) 신설 - 클라우드·AI·IoT 등 주요 정보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변경, 주요 정보시스템의 신설·변경, 중대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주요 보안대책의 수립·변경 등의 경우 보안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절차 및 서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정하도록 함

바. 부칙 2026년 개정 시행일 추가

5.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 공포일로부터 시행

첨부 : ①대학정보화위원회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6 년 6 월 18 일

소관부서 : 정보전산원 장 은 겸



관련부서 :

(인)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 대학정보화위원회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생략>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내 종합정보전산망 구축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연구, 학사 및 일반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학술정보 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4. 메인 컴퓨터 등 전산관련기기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전산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현행유지>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화 및 사이버보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00.00.) 1. 학내 종합정보전산망 구축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유지> 2. 교육, 연구, 학사 및 일반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현행유지> 3. 학술정보 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현행유지> 4. 본교의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0.00.) 5.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및 중요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0.00.> 6. 클라우드·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주요 정보시스템 도입의 보안성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0.00.> 7.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및 자체 진단·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0.00.> 8. 중대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0.00.> 9. 외부 위탁·용역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0.00.> 10. 사이버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6.00.00.> 11. 그 밖의 전산 및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0.00)	「사이버보안 관리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정보화 및 사이버보안의 통합 심의 기구로서 기능을 명확히 함. 종전 제4호(메인 컴퓨터 등 전산관련기기 선정)는 정보전산원장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정보지원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정보관련 분야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정보전산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한다. (개정 2026.00.00.) ② 위원은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0.00.) ③ <현행유지>	위원장 직책명 오기 정정("정보지원센터장"→"정보전산원장"), 「사이버보안 관리규정」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겸임 명문화, 위원 정원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 위원 위촉 범위 제한("정보관련 분야") 삭제로 위원 풀 확대
제4조(임기) <생략>	제4조(임기) <현행유지>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생략>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현행유지>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6.00.00.> ②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이 발생한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6.00.00.) ③ 서면회의는 위원에게 안전을 송부하여 의견을 회신받는 방법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00.00.> ④ 대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6.00.00.)	정보화 및 사이버보안 관련 안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절차 정비. 안전 수시 처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면회의 의결 절차 신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 위원의 회신문서 또는 결재문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총장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서면회의 도입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방법 보완(회신문서·결재문서로 갈음 가능). 전체 심의사항이 아닌 중요 사항 또는 총장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보고하도록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7조의2(보안성 심사) <신설>	제7조의2(보안성 심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2.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3. 사물인터넷(IoT) 기기 도입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변경 5. 주요 정보시스템의 신설·변경 6. 중대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주요 보안대책의 수립·변경 7.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성 심사의 절차 및 서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00.00.]	「사이버보안 관리규정」 제5조의2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신기술 도입·주요 정보시스템 변경·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보안성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 신설
제8조(보칙) <생략>	제8조(보칙) <현행유지>	
부칙 (2010~2023년 종전 부칙) 부칙 <신설>	부칙 <현행유지>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사이버보안 관리규정」 및 「정보전산원 운영규정」 시행일과 통일하여 개정 시행일 명시

대학정보화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 대학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화 및 **사이버보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00.00.)

1. 학내 종합정보전산망 구축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연구, 학사 및 일반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학술정보 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4. 본교의 사이버보안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6.00.00.)
5.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및 중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6.00.00.>
6. 클라우드·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주요 정보시스템 도입의 보안성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6.00.00.>
7. 사이버보안 위협평가 및 자체 진단·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6.00.00.>
8. 중대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6.00.00.>
9. 외부 위탁·용역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신설 2026.00.00.>
10. 사이버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6.00.00.>
11. 그 밖의 전산 및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6.00.00.>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정보전산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겸임한다.** (개정 2026.00.00.)

② 위원은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00.00.)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한다.**<신설 2026.00.00.>

②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이 발생한 때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6.00.00.)

③ 서면회의는 위원에게 안전을 송부하여 의견을 회신받는 방법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6.00.00.>

④ 대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26.00.00.)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 위원의 회신문서 또는 결재문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00.0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총장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26.00.00.>

제7조의2(보안성 심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2.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3. 사물인터넷(IoT) 기기 도입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변경
5. 주요 정보시스템의 신설·변경
6. 중대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주요 보안대책의 수립·변경
7.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성 심사의 절차 및 서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00.00.]

제8조(보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